

#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제안요지

## 1. 개정이유

- 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 구성원이 공유하여 경영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체계화하고 명칭을 「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」→「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규정」 변경
  - ※ 사업관리 = 심사분석(기존제도) + 단위사업관리(신설) + 리스크관리(신설)
-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관리를 통해 공정관리와 재무관리를 일원화하여 사업목표를 관리하고, 사업리스크를 예방 또는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(실무)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## 2. 주요골자

- 사업관리에 대한 사항 중 신설되는 내용,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의(제2조), 기능(제3조), 기준(제4조)을 신설
- 단위사업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(제4장 단위사업관리 제18조 ~ 제20조 신설)
-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(실무)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(제5장 리스크 관리 제21조~제26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안근거 -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(입안)
- 나. 예산조치 - 조치(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)
- 다. 합 의 - (1) 관계부서 (전 부서)  
(2) 부패영향평가
- 라. 절 차 - 사규관리규정 제2장 제정 및 개폐 절차 이행